



#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한계와 개선방안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본고는 2012년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저조한 가입률, 과도한 중도인출에 따른 해지증대, 연금수령 유인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
-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시행된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 조기에 써 버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IRA(개인퇴직계좌)를 보완한 제도임.
  - 자영업자 등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이직 또는 퇴직 시 나오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설정된 IRP로 이전해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확보하고자 도입됨.
  - IRP 도입 당시엔 퇴직연금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꿀 것이란 기대가 높았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지표에 의하면 2016년 3월말 IRP 적립금은 11조 3,617억 원으로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수준에 불과함.
  - 현재, 법정퇴직금제도의 퇴직적립금은 IRP로 이전이 의무화되지 않아 연금재원 소진이 우려됨.
  - IRP로 이전된 퇴직적립금의 경우도 약 80%가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전업주부, 저소득 공무원 등은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로 형성되고 있으며 엄격한 연금수령요건 등으로 연금으로 전환이 미흡함.
- 따라서 IRP제도의 노후보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바람직함.
  - 첫째, 자영업자 이외에 전업주부,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IRP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법정퇴직금제도의 퇴직적립금도 자동적으로 IRP로 이전을 의무화하여 퇴직일시금이 연금재원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셋째, 중도인출 기준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자율적인 인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담을 부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 정년연장 추세에 맞추어 IRP 자동가입연령을 60세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수급자 사망 시 유족이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의 비과세 방안 검토가 요구됨.

## 1. 검토배경



-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임<sup>1)</sup>.
  - 따라서 법정 퇴직금제도의 퇴직적립금을 IRP로 이전하거나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적립금을 IRP로 이전하여 노후의 연금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sup>2)</sup>.
- 그럼에도 IRP가 전체 퇴직연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퇴직연금 적립금 기준)이 9.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sup>3)</sup>.
  - 2015년 IRP 추가납입금(300만 원)에 대한 별도의 세제혜택부여로 일시적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2016년 3월말 현재 퇴직연금시장에서 IRP 비중은 10%에 미치지 못함.

〈표 1〉 퇴직연금시장에서 IRP 시장점유율 (퇴직연금적립금 기준)

구분	DB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2014.12 (%)	70.5	21.7	0.7	7.0
2015. 3 (%)	69.2	22.6	0.7	7.6
2015.12 (%)	68.3	22.5	0.6	8.6
2016. 3 (%)	67.1	23.4	0.6	9.0

주: 기업형 IRP(IRP 특례): 근로자 10인미만 기업이 가입시, 예외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지표 수정 작성

- 또한 IRP에 이전된 퇴직적립금 중 약 80%가 일시금으로 즉시 인출되고 해지됨에 따라 연금재원의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sup>4)</sup>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이에 본 고는 IRP 제도 현황을 통해 나타난 문제를 살펴 본 후,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1)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기업형 IRP, 개인형 IRP(퇴직 IRP, 적립 IRP)로 구분되지만 순수한 의미의 IRP는 개인형 IRP(근로자 10인미만 기업에서 설정하는 IRP특례인 기업형 IRP는 제외)를 의미함.  
 2) IRA는 퇴직급여제도간의 연계성 또는 이관성(Portability)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성격을 지님.  
 3) IRA제도(우리나라의 IRP와 유사)가 정착된 미국은 2015년말 기준으로 전체 은퇴자산 중 IRP가 차지하는 비중이 30.6%에 이르고 퇴직연금 관련 적립금 중 43.3%의 시장점유율을 보일 정도로 IRA 비중이 높음.  
 4)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IRP로 이전된 퇴직적립금 중 79%가 바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남.

## 2. IRP 제도 현황



### 가. IRP의 가입 및 이전

-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여 받는 퇴직적립금은 IRP로 자동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중간정산자 등은 본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IRP에 가입이 가능함.
- 퇴직연금가입자가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규정됨.
- 다만,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경우는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 IRP 가입대상 및 내용

가입대상	내용
- 퇴직근로자	- 퇴직연금(DB,DC)에서 퇴직급여 수령한 근로자(의무) · 퇴직연금가입자가 55세이전 퇴직시 -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자(자율)
- 추가부담금 희망자 * 자영업자는 2017년 7월부터 가능	- 퇴직연금제도 운용 중인 기업의 근로자 -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자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2015) 등에 기초 작성

- 또한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그리고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IRP계좌에 추가부담이 가능함.
- 따라서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도 직전회사 재직 시 IRP계좌가 있었거나 이직하면서 IRP를 개설한 경우라면 추가납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나. IRP 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해지

- 근로자의 편리성을 제공하여 퇴직자산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법정사유(일부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sup>5)</sup>을 허용하도록 함.

- 즉 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 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시,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시 등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함.

〈표 3〉 근퇴법상의 중도인출 및 해지

구분	내용	특징
중도인출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시 가능	법정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질병, 부상에 따른 6개월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천재지변 등
해지여부	가능	원하는 시점에 별도의 패널티없이 가능

자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2015) 등에 기초 작성

- 또한 이직 또는 퇴직 시 퇴직적립금을 IRP로 이전한 후 자율적으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특별한 제재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체계임.

- 즉 IRP제도로 이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전 후 해지에 따른 별도의 패널티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다. IRP 적립금의 수급

-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적립금이 IRP제도로 이전되어 연금화를 위한 노후재원이 축적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행 근퇴법에서는 은퇴 시에 일시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4〉 퇴직급여 수령방법(기준) 및 내용

수령방법 및 기준	내용
급부수령방법	일시금 또는 5년 이상 연금
연금수령기준	10년 이상 퇴직연금 가입
연금지급연령	55세 이상

자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2015) 등에 기초 작성

- 즉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IRP에서도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수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5) 중도인출은 현행 법상 IRP 및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만 가능한 반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담보대출은 모든 퇴직연금 제도에서 가능함.

### 3. IRP의 문제점



- IRP의 현황 문제로는 법정퇴직금제도 퇴직적립금의 IRP 이전 문제, 전업주부 및 저소득공무원 등에 대한 가입허용 문제, IRP 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해지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표 5〉 IRP의 문제점

문제점	영향
법정퇴직금의 IRP 이전 의무화 부재	법정퇴직금의 은퇴재원 소진 · IRP와 법정퇴직금제도와의 연계성 단절
전업주부 등에 대한 가입 미허용	IRP 가입의 사각지대 형성 우려
느슨한 중도인출 조건에 따른 해지증대	IRP를 활용한 연금재원 확보 미흡
세제혜택 등 연금화 유인 부족	IRP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저조

- 먼저 퇴직연금제도에서 IRP로의 이전은 의무화된 반면, 법정퇴직금제도에서 IRP로의 이전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법정퇴직금제도와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점임.
  - 법정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일시금을 IRP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IRP로 이전이 가능한 임의가입 형태(opt-in)를 띠고 있음.
    - 퇴직일시금의 80% 이상을 IRP에 이전한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IRP가입이 가능함.
  - 따라서 법정 퇴직금제도의 퇴직적립금이 은퇴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IRP와 법정 퇴직금제도와의 연속성은 매우 취약함.
  - 이와 더불어 현재 60세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IRP 이전 연령(55세 이전 퇴직자)의 설정도 문제로 지적됨.
    - 55세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IRP에 편입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전업 주부, 저소득 공무원 등은 IRP 가입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IRP 가입의 사각지대 형성이 우려된다는 점임.
  - 전업 주부 등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IRP의 노후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최근에는 가입범위를 미성년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 등과 차이가 존재함.

- 일본 또한 IRP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2017년 1월부터 근로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IRP 가입이 가능함<sup>6)</sup>.
- 셋째, 퇴직자산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중도인출 요건을 완화하였지만, 중도인출의 과도한 허용은 자칫 IRP 적립금의 해지로 이어져 연금재원의 소실 우려가 있다는 점임<sup>7)</sup>.
- 현재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이외에도 직계가족의 대학등록금, 장례비 및 혼례비와 같은 자녀 부양 사유도 추가적인 중도인출사유로 인정하는 등 중도인출사유 범위가 매우 확대되었음.

〈표 6〉 주요국의 중도인출 비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인출가능연령	59.5세	60세	55세 (주별로 다소상이)	60세
중도인출시 패널티	10% 가산세	55% 세율적용	특정사유 외 중도인출금지	특정사유 외 중도인출금지

자료: ICI(2016) 및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2015) 등에 기초 작성

- 이러한 중도인출사유의 범위 확대는 IRP 해지로 이어져 IRP의 본연목적이라 할 수 있는 퇴직급여 제도간의 연계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이 때문에 미국은 59.5세 이전에도 중도인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그외 인출은 10% 패널티세를 별도 부가하고 있으며 영국 등도 일정연령이전의 인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함.
- 또한 퇴직적립금이 IRP로 이전하여 연금화를 위한 노후재원이 축적되더라도 은퇴 시에도 일시금수령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연금화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가입기간이 10년이고 55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5년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금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 또한 변경된 세법하에서도 일시금 수령을 방지할 만큼 세제상의 유인도 크지 않으며<sup>8)</sup> 연금수급자

6) 현재 일본의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IRP에 해당하는 개인형 DC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전업주부,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함.  
 7) 중도인출은 담보대출에 비해 실행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적립금의 인출에 따른 해지증대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이 라는 퇴직연금 본래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8) 2014년 연금세제개편으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해 주고 있음.

사망 시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한 후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 시 상속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제를 통한 연금유인효과가 낮은 상태임<sup>9)</sup>.

- 반면, 영국은 연금수급자가 75세 이전 사망 시 연금소득세를 비과세하며, 호주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유족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함<sup>10)</sup>.

## 4. 개선을 위한 제언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RP가입이 저조하고, IRP에 이전된 적립금의 대부분이 바로 인출 또는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IRP의 노후보장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IRP의 개선방안은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법정퇴직금제도 존치 등)을 감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표 7〉참조).

〈표 7〉 IRP 제도 개선방안

구분	개선방안 (요약)
가입대상 확대	- 전업주부, 저소득 공무원 등으로 가입대상 확대
IRP이전 확대	- 법정퇴직금제도 퇴직적립금의 IRP로 이전 의무화 필요 · 60세 수준으로 IRP 자동가입연령 상향조정 검토
중도인출 통제	- 엄격한 중도인출 요건 및 기준 적용 (중도인출 법적 제한) · 자율적 중도인출에 대한 별도 세부담 부여 검토
연금수령 유인	- IRP 적립금 연금지급기준 완화 (퇴직연금가입기간 등) - IRP 가입기간별 세율조정 및 상속 시 연금소득세 비과세 검토

■ 먼저 IRP제도의 가입대상을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중심에서 전업주부, 저소득 공무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영업자 이외에 전업주부, 저소득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IRP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IRP의 노후보장기능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음.

9)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의 유족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의 4호에 의해 비과세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음.

10) 이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15년 퇴직연금정책연구보고서, P.317 참조.

- 둘째, 법정 퇴직금제도의 퇴직적립금도 자동적으로 IRP 가입이 의무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연금재원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60세 정년연장 추세에 맞추어 퇴직급여제도에서 IRP로의 이전 예외사유인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를 “60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로 개정이 요구됨.
  
- 셋째, IRP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도인출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IRP 이 전후 자율적인 해지 방지차원에서 별도 세부담을 부여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함.
  - 또한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해 가입을 원활하게 하되, 연금지급기간(5년)은 매우 단기인 점을 감안,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외에 IRP 장기유지를 위해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소득세율을 낮추어 주거나, 연금수급자 사망 시 상속자가 수령하는 유족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연금수령 유인차원에서 검토가 요구됨. [kiri](#)